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환경부장관 관장,
보험료율의 기준 제시 및 「보험업법」 적용 등 〉
■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80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환경부장관 관장, 보험료율의 기준 제시 및 「보험업법」 적용 등	2
IV. 참고자료	8
1. 환경책임보험 개요	8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24일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환경부장관 관장, 보험료율의 기준 제시 및 「보험업법」 적용 등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 등 합리적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환경책임보험에 재무제표 등 제출, 공시 등 「보험업법」 상의 규정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7조의2(보험사업의 관장 등)</u> ①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 중장기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응 및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

현행	개정안
	<u>설별로 산정하여야 한다.</u> ③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제119조·제124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항·제136조·제162조·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자”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자”로 본다.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에 따른 손해율이 미반영되는 등의 한계가 있어, 개정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¹⁾이나 농어업재해보험²⁾과 같이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이 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제6조(보험사업자) ①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 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보험료율의 산정) 보험사업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 제13조(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① 보험사업자는 기초서류를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5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18조제1항·제119조·제124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항·제136조·제162조·제176조·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 ② 이 법에 따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 2) 「농어업재해보험법」
-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

관장하게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환경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하여 환경책임보험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① 보험상품 요율은 「보험업법」 제129조³⁾ 등에 따라 과거 경험통계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별도 기준에 따르는 경우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자 부담 전가 및 국가-보험계약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②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보험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배제됨이 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③ 예산지원이 전제되는 다른 정책성보험과 다르므로 타 법률과의 형평성, 규제목적,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① 환경오염사고의 다양한 리스크 유형 반영

조까지, 제118조 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 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3)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4)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의 경험통계 등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종목별이나 위험별 특성에 따라 위험률을 산출 혹은 조정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순보험요율

및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적 통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스크 평가 방법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②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제35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제18조) 등도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공백 없이 보험을 운영 중이며, ③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등 유사 정책성보험과 형평성, 규제 목적, 법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타 정책성보험과 같이 환경부장관의 관장을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동 개정안 심사시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보험료율 산정에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보험업법」 준용 규정 보완 등) 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대재해추정모델, 대형 복합시설 조사보고서, 기타 환경리스크 평가 및 전문기관 의견서 등

[환경책임보험 - 타 의무보험 비교]

구 분		환경책임보험 (기업성 보험 특성 반영 필요)	타 의무보험 (참조요율)
적용 대상		· 기업성 보험 · 중·대형 물건 중심 · 비동질 위험에 활용	· 가계성 보험 · 소액 물건 중심 · 동질 위험
요율 산출방법		· 소수의 통계로 별도 위험분석 필요 * 사고통계로 일률적 요율제시 한계	· 다수 사고 통계 기반
특 징	장점	· 개별 고위험 업종의 세부특성을 반영한 위험 차등 적용 가능	· 동질 위험집단에 대한 업계 평균 적용
	단점	· 사업장별 평가 비용 증가	· 개별 대상별 위험 반영 한계

문 의 처

02)6788-5542

참고

환경책임보험 개요

□ 도입 배경

- 구미 불산사고("12.9), 여수 GS칼텍스 유류유출사고("14.1) 등 대형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비한 재정적 수단의 필요성 대두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정("14.12) 시, △신속한 피해자 보상,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 비용 경감을 위해 의무보험*으로 환경책임보험 도입("16.7 시행)

* 임의보험은 일부만 가입, 보험료 증가, 보험사 인수 거부 등 실효성 저하 우려로 미채택

□ 보상체계

- **(보장 범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하는 대기·수질·토양 오염 등의 원인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제3자 배상책임, 점진적·급진적 포함)

※ 오염자 책임원칙과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에 따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 **(보장 한도)** 시설의 종류에 따라 30 ~ 300억원*까지 보험으로 보장

* 시설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라 가·나·다군으로 구분하고, 보장금액 및 배상책임한도 차등

- **(배상책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을 시설 종류에 따라 500 ~ 2,000억원까지 부담

< 보장한도 및 배상책임한도 >

금액 구분	국 가 (구제계정)		
	사업자	사업자	국 가 (구제계정)
배상책임한도 2,000억 (가군 기준) 나군 1,000억 다군 500억			
보험 보장한도 300억 (가군 기준) 나군 100억/80억 다군 50억/30억	보험사 (환경책임보험)	사업자	
	보험 가입 사업자	보험 미가입 사업자	원인 제공자 미상 / 무자력 등

□ 의무가입 대상 및 현황

- **(가입 대상)**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약 14만개 사업장)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약 1.5만개 사업장)

< 상세 의무가입 시설 >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7조

- ▷ (대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종~5종), 대기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
- ▷ (수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종~5종), 수질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 ▷ (폐기물)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 (토양) 저장용량 1천kℓ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 ▷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주요 취급시설
- ▷ (해양시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오염물질 저장시설 합계 용량 300kℓ 이상

- **(가입 현황)** 15,331개 대상 사업장 중 97.9%인 15,013개소 가입('24.9월)

가입 대상 (사업장 수)	가 입	미가입	세부내역	
			미가동	그 외
15,331	15,013(97.9%)	318(2.1%)	64(0.4%)	254(1.7%)

- **(총보험료)** 환경책임보험 시행 첫해('16)보다 매년 가입 사업장은 **15.5%**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총보험료는 **62억(9.6%)** 감소

* ('16년) 사업장 13,330개소, 총보험료 647억 → ('23년) 사업장 15,400개소, 총보험료 585억

< 연도별 보험가입 사업장 및 가입률 >

